

제179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11. 26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49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,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나.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각 연 3퍼센트로 신설

- 다.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공유재산 대부
요율을 1,000분의 25이상으로 신설
- 라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
- 마. 용도폐지나 용도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생략 가능
대상을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수정하여 일반재산을
포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주민
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, 변상금,
교환차금,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반환 이자율을
인하하고,

사립학교 대부료의 요율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
범위에 종교용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추가하는 규정을
신설 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
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7조2,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구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,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, 안 제35조에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, 안 제91조제1항, 제91조의2에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27조에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의 구유재산 대부요율을 현행 1천분의 50에서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대부요율인 1천분의 25이상으로 인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종교 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음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(대통령령 제24631호, '13.6.21 일부개정, '13.12.22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고, 사립학교의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 적용기준에 맞추며,

1) 법 제94조의 2에 따라 2)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종교 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개정에 따른 다소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.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, 점유 사용으로 활용이 곤란한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,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1) **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**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2) **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안전행정부. 2013. 7)**

제16조(수의매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

2.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

참 고 자 료

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1조의3(교환차금의 납부)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21> [시행일 : 2013.12.22]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

제39조(대금의 납부 및 연납)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(全額)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21>

제45조(교환차금의 납부)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6.21>

제81조(변상금) ① **법 제81조**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·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**제14조** 및 **제31조**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8.4, 2013.6.21>

제82조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 **법 제82조**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"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6.21>

2

국유재산법 시행령

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4.1, 2013.4.5>

3.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: 1천분의 25 이상